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1

발의연월일: 2020. 7. 6.

발 의 자: 정춘숙·박용진·송옥주

유동수 · 임종성 · 송갑석

김철민 · 서삼석 · 기동민

박찬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과 생계비,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미혼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또한 한부모가족은 양부모가족에 비해 생계, 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아 복지 급여 지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복 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복지 급여 중 추가아동양육비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이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 한정되고 있는바,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추가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면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 제12조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면"을 "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 하면"으로 한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
	<u>ㅇ</u>)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③
인 중 <u>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u>	<u>대한민국</u>
<u>여 대한민국</u> 국적의 아동을 양	
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	
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	<u>,</u>
원대상자가 된다.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	
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u>다만, 이 법</u>	<u><단서 삭제></u>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
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	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2

지급	할 때	에 미	혼모	+ □	미혼	부
가 5	세 이	하의	아동	을 성	냥육	하
거나	<u>청소</u>	년 한	·부모	가 ㅇ	가동	을
<u>양육</u>	<u>하면</u>	예산의	님 범	위에/	서	추
가적	인 복	지 급	여를	실시	니하	여
야 힌	나. ㅇ] 경우	그 모	또는	부	의
직계	존속이	5세	이하	의 ㅇ	가동	을
양육:	하는 7	경우에	도 또	하 >	같다	

3 •	4	(생	략)

<u>29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u>
아동을 양육하면
③·④ (현행과 같음)